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강준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18 발의연월일 : 2024. 6. 19.

발 의 자: 강준현 · 이강일 · 임호선

이정문 • 김병기 • 민병덕

강훈식 · 김용만 · 박상혁

김현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로 하여금 그 부실 또는 부실 우려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부실관련 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하지만 자료제공 요구 범위가 법원행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 자치단체 등으로 한정되어 있어 가상자산이 재산 은닉의 유력한 대안 이 되고 있는 실정임.

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'가상자산 사업자'를 추가하여 부실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할 수 있도록 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의 3).

법률 제 호

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예금자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의3제1항 본문 중 "공공기관 및 금융회사"를 "공공기관, 금융회사 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	제21조의3(자료제공의 요구) ①
공사는 제21조의2제1항부터 제	
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	
상청구의 요구, 손해배상청구권	
의 대위행사 또는 소송참가를	
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원행	
정처,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	
자치단체, 그 밖에 대통령령으	
로 정하는 <u>공공기관 및 금융회</u>	
<u>사</u> (이하 이 조에서 "공공기관	및 「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
등"이라 한다)의 장에게 부실	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
관련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	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가상자
족관계등록사항과 재산 및 업	<u>산사업자</u>
무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의	
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. 다만,	
금융회사의 장이나 그 특정점	
포에 부실관련자 또는 이해관	
계인의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	
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	
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1조의4	
를 적용한다.	
② ~ ④ (생 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